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법인세분) 과세누락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삼척시, 양구군, 횡성군, 화천군, 고성군

내 용

강원도 삼척시 등 5개 시·군에서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특별징수분)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르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⁶⁷⁾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29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⁶⁸⁾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7)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됨

68)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됨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고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3조의25에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103조의59에 따르면 “세무서장등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TIMS(국세정보시스템)에서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및 LTIMS(지방세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매월 실시간으로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의 개인지방소득 및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자료와 세무서장등이 통보한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미신고 및 미납부 건에 확인될 경우에는 누락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법인세분)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삼척시, 양구군, 횡성군, 화천군, 고성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431/61,250,580원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법인세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 건에 대한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법인세분) 부과누락 현황 (단위: 건, 원)

세 목	합계		특별징수분		법인세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31	61,250,580	356	14,258,340	75	46,992,240
삼척시	15	16,725,960	-	-	15	16,725,960
양구군	329	28,280,120	278	7,853,640	51	20,426,480
횡성군	3	4,695,900	-	-	3	4,695,900
평창군	78	6,404,700	78	6,404,700	-	-
화천군	4	4,679,460	-	-	4	4,679,460
고성군	2	464,440	-	-	2	464,440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삼척시장, 양구군수, 횡성군수, 평창군수, 화천군수, 고성군수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미신고 또는 미납부 건에 대하여 부과누락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법인세분) 431건 / 61,250,580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